<2018년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>

「창원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2차 지원」안내

■ 사업 개요

○ 창원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는 「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창원시에서 전액 시비로 창원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2018년도 보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.

■ 사업 기간

구 분	교 육 기 간	신 청 기 한	지원일
1 차	2018년 1월 1일 - 5월 31일	6월 5일	6월 중순
★ 2 차	2018년 6월 1일 - 8월 31일	9월 5일	9월 중순
3 차	2018년 9월 1일 - 10월 31일	11월 5일	11월 중순
4 차	2018년 11월 1일 - 11월 30일	12월 5일	12월 초순
5 차	2018년 12월 1일 - 12월 10일	12월 14일	12월 중순

■ 사업 대상

- 창원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
- ※ 단.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서 당해연도 회원회비 납부자에 한함.

■ 소요 예산

- 1인당 최대 지원기준액 48,000원
- ※ 지원기준액 미만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수중에 확인된 금액만큼 지원

■ 신청 및 지원 방법

구 분	기관 신청	개인 신청	
구 비 서 류	기관에서 보수교육비를 부담한 경우	개인이 보수교육비를 부담한 경우	
	1. 지원신청서 <u>(*기관)</u> 2. 보수교육 영수증 3. 보수교육 이수증 4. 통장사본 <u>(*기관)</u> 5. 고유번호증(사업자등록증)	1. 지원신청서 <u>(*개인)</u> 2. 보수교육 영수증 3. 보수교육 이수증 4. 통장사본 <u>(*개인)</u> * 개인 통장으로 개별 지원	
참 고 사 항	* 지정서식은 본협회(http://casw.or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려 받기 * 반드시 발송 공문 및 지정서식(기관/개인) 사용, 전자우편 신청 ★ 2018년 변경사항 ★ 1) 1차-5차 교육기간 및 신청기한을 준수한 자에 한함 2) 1)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모든 차수 지급이 완료된이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(12월 중)		

- (개인)신청의 경우 신청자 명단에 일괄적으로 작성, 개인 통장으로 개별 지원
- <u>해당 교육기간 및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선착순(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)으로</u> 신청 완료 후 창원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확인하여 통장(기관/개인)으로 지원

■ 문의

○ 담당 : 사무국장 한진희(☎552-0577 / ⊠csw1018@hanmail.net)

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